

서울연구원정관

제정 1992. 6.30
개정 1994.12.19
개정 1995. 3.28
개정 1996. 1.25
개정 1996.12.10.
개정 1997. 1.29
개정 1998. 3.12
개정 1998. 8.31
개정 1999. 1. 6
개정 1999. 8.28
개정 2000.12.11.
개정 2001. 6.28
개정 2001.11.12.
개정 2003. 2. 7
개정 2003.12.22.
개정 2006. 3.16
개정 2008. 2.18
개정 2011. 2.11
개정 2012. 4. 5
개정 2012. 7.26
개정 2014. 3. 3
개정 2014.12.31.
개정 2015. 4. 2
개정 2015.10. 6
개정 2016. 7. 1
개정 2016.10.17.
개정 2018. 4.20
개정 2019. 3.26
개정 2019. 7.22
개정 2020. 4. 7
개정 2020.12.10.
개정 2021.12.20.
개정 2022. 3. 8
개정 2022. 4. 7
개정 2022.10.28
개정 2023.10. 5
개정 2024. 9.24
개정 2024.11.26
개정 2025. 2.27
개정 2025. 5.23
개정 2025.11.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 7.26)

제2조(목적) 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술개발·연구하여 서울특별시 정책 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에 둔다. (개정 '94.12.19, '97.1.29, 2003.2.7, 2019.3.26.)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3. 3., 2015. 4. 2.)

1.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기술개발·연구(개정 2018.4.20., 2023. 10. 5.)
2.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 (개정 2018. 4.20., 2023. 10. 5.)
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신설 2023. 10. 5.)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신설 2023. 10. 5.)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개정 2008. 2.18.)
6.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개정 2018. 4.20.)
7.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8. (삭제 2015. 4. 2.)
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7.22.)
10. 기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 7.22., 2023. 10. 5.)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000원으로 하며, 기본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7., 2022.3.8)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금전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 (개정 2023. 10. 5.)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개정 2020.12.10.)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11)
- ③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 ④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5)
- ⑤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연구원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5)

제7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10., 2023. 10. 5.)

- ②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③ 서울특별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5)

제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 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0.)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신설 2020.12.20.)
2. 연구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신설 2020.12.20.)
3. 연구원의 운영재원이 부족한 경우(신설 2020.12.2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신설 2020.12.20.)

②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12.20.)

제9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 원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5)

제11조(결산보고) 원장은 매연도 수지결산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연구원 정관

(개정 '96.1.25, 개정 2000.12.11)

제12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연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기본재산 적립 등으로 처분한다.

(개정 '98.3.12, 2001.6.28., 2020.12.10)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96.1.25, 2016.10.17)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노동이사 포함) (개정 '99.1.6, 2003.12.22, 2016.10.17, 2018. 4.20., 2020.12.10.)

감사 2인 (개정 2000.12.11)

원장 1인

노동이사 1인 (신설 2016.10.17., 2020.12.10.)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개정 '99.1.6)

③ 제1항 이사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20)

제1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96.1.25)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재난안전기획관 (개정 '98.8.31, 2003. 2.7, 2011.2.11, 2016.7.1, 2023. 10. 5., 2025. 2.27)

2. 원장 (개정 '99.1.6)

3.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신설 '99.8.28)

②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0.12.11.)

③ 노동이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6.10.17., 2020.12.10.)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2항의 선임직 이사로 추천한다. (신설 2018. 4.20.)

1.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개정 2023. 10. 5.)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③ (삭제'99.1.6)

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6.1.25, 2000.12.11)

⑤ 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신설 2016.10.17., 2020.12.10.)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1)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4.20.)

제17조(감사의 선임 등)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의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98. 8.31,

서울연구원 정관

2000.12.11, 2015.10.6., 2019. 3.26., 2022.3.8., 2023. 10. 5.)

②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 3.26)

③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3.26)

1.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현재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사회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5)

제18조(원장) ① 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96.1.25, 2000.12.11)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8조의2(부원장) (삭제 '99.1.6)

제19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96.1.25. '99.1.6)

② 원장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6.1.25. '99.1.6)

제20조(직제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조직은 [별표 2],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1.6, 2000.12.11., 2012.4.5., 2022.3.8., 2023.10.5., 2025.5.23., 2025.11.27)

② 전항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8.)

제20조의2(부설기관의 설치)

[본조신설 2006.3.16]

[본조삭제 2012.4.5]

제20조의3(부설기관의 설치)

[본조신설 2014.3.3]

[본조삭제 2015.4.2]

제20조의4(부설기관 예산회계 독립)

[본조신설 2014.3.3]

[본조삭제 2015.4.2]

제21조(직원) ① 연구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10.17.)

1. 주요사업계획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의 변경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20.)
6. 주요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
7. 연구원의 해산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6.10.17.)
10. 기타 이사장 및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0.17.)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0.12.11)

서울연구원 정관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10)

③ 비상근 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이사회 소관부서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소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2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3.16)

②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연구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분항신설 '96.1.25)

[제목개정 2023. 10. 5.]

제26조(회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0.12.11)

제27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자문위원회

제28조(연구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의 발전방향 및 주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99.8.28)

②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분항신설 '99.8.28)

제29조 (삭제 '99.8.28)

제30조 (삭제 '99.8.28)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5)

제32조(규정의 제정) ① 연구원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해산) ①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34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35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연구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지식재산권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연구원 정관

제2조(경과조치) 이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 부터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의 선임) ① 연구원 설립 당시의 임원(당연직이사 제외)은 설립위원회 에서 선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등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내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서울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설립자는 현금 500,000원의 출연과 함께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2년 6월 30일 각각 서명 날인함.

설 립 자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정 관 작 성 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위원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강 덕 기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관 강 홍 빈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이 원 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윤 두 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이 신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안 두 순

서울대학교 교 수 최 상 철

부 칙(’94.12.19)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3.28)

(시행일)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기금운용및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96.12.10)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9)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1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기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의결한”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전입한”으로 한다.

부 칙(’98. 8.3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6)

서울연구원 정관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28)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1)

① 법률 제6121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당시 이사장·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1998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11월 12일까지로 하며, 원장의 임기는 1999년 10월 18일부터 2002년 10월 17일까지로 한다.(개정 2001.11.12., 2019. 3.26)

②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8)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2)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6)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8)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5)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②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제1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각각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을 “서울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상근임원(원장)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을 “서울연구원 이사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을 “서울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각각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서울연구원 정관

제9조제1항 [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장”을 “서울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임·직원 퇴직금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⑥ 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⑦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⑧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⑨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⑩ 원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2014. 3. 3)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 6.)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7.)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20.)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26.)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22.)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7.)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0.)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0.)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8.)

서울연구원 정관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7.)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8.)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통합에 따른 각종 조치) 2023년 7월 2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843호)의 부칙에 따른다.

부 칙(2024.9.24.)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26.)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2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2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2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개정 2020. 4. 7, 20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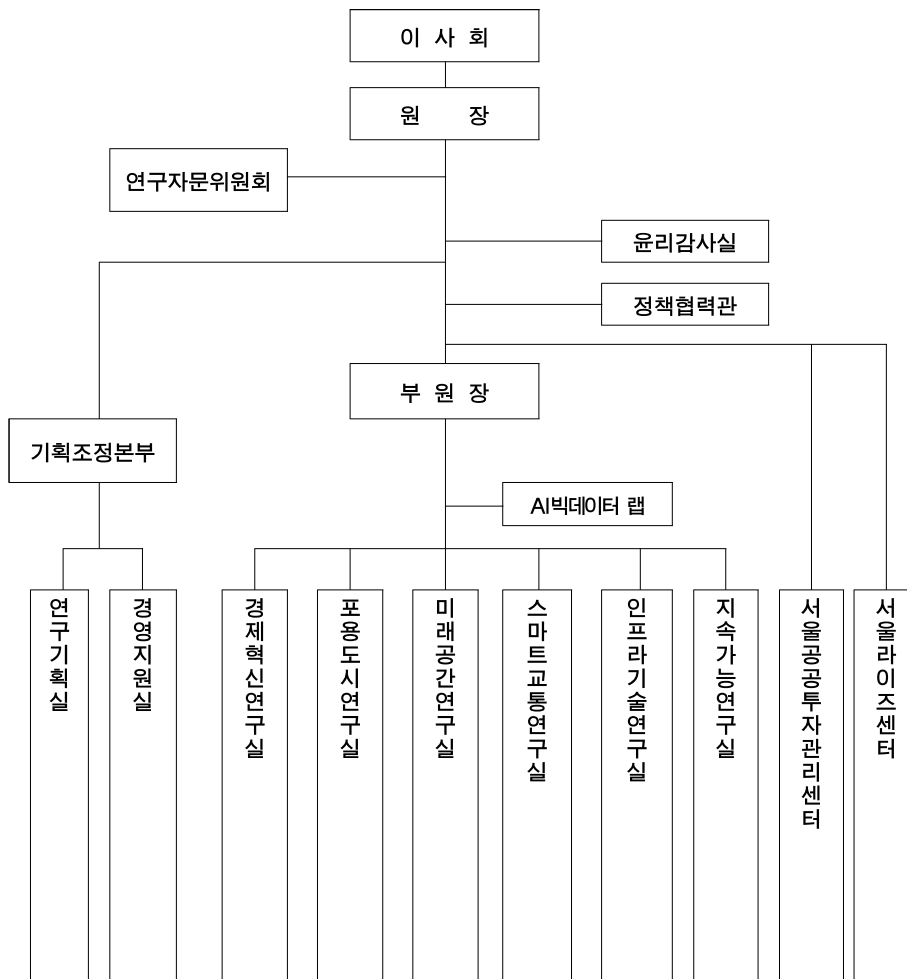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4,789,372,000	
현금	설립자	5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300,000,000	추가출연
	서울연구원	4,488,872,000	잉여금

[별표 2] 기구표(신설 2022.3.8. 개정 2022.10.28., 2023.10.5., 2024.9.24., 2024.11.26., [2025.11.27.](#))

기 구 표



서울연구원 정관

[별표 3] 정원표(신설 2022.3.8., 개정 2023. 10. 5., 2024. 11. 26., 2025. 5. 23.)

정 원 표

직	종	직	급	정	원
계				305	
임	원 (상 근)	원	장	1	
연	구	직	선 임 연 구 위 원	117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100	
일	반	직	1 급	7	
			2 급	18	
			3 급	31	
			4 급	15	
공	무	직	16		